가입및탈퇴규정

제정 2020. 1. 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5조에 따른 단체 및 개인의 대한요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대한 가입 및 탈퇴의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가입 및 탈퇴) ① 협회에 가입 할 수 있는 단체 및 개인은 다음과 같이 가입 및 탈퇴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단체는 총회의 의결

가. 시·도 회원단체

나. 전국규모연맹체

다. 재외한인요트협회

라. 한국클래스협회

마. 제휴단체

2. 다음 각 목의 단체는 이사회의 의결

가. 등록단체

나. 개인회원

② 가입 단체는 다음의 경우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최종 탈퇴 승인된다. 다만 전국규모연맹체는 협회 정관 및 전국규모연맹체규정에 따른다.

1. 탈퇴이유가 포함된 탈퇴요청서(탈퇴를 결의한 회의록 등)를 제출한 경우

2. 이 규정에서 정한 가입요건을 2년 이상 상실하여 존속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곤란한 경우

3. 협회 정관, 규정, 지시사항을 위배하는 등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구성원간의 분쟁, 재정악화, 집행부 부재 등의 사유로 정상적 사업 수행이 불가한 경우

5. 협회 위상을 심각하게 참해하거나 요트발전을 저해하는 단체인 경우

6. 회비가 미납된 경우

7. 기타 불미스러운 사유에 의한 경우

③ 단체의 가입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매년 협회에 단체의 변경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신청서류) ① 협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단체 소개서(연혁, 단체설명, 활동개요, 조직, 임원명단, 회원명단, 전년도 사업계획·예산서 및 결산서 등)

3. 단체의 정관(규약) 및 제 규정

4. 가입 및 등록을 의결한 회의록

② 협회 사업에 참여하고자 가입하는 등록단체 및 개인회원은 홈페이지 및 등록시스템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제4조(권리와 의무) ① 시·도 회원단체, 전국규모연맹체, 재외한인요트협회, 한국클래스협회, 제휴단체는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권리를 갖는다.

1. 협회 총회에 권한의 위임을 받은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 및 의결할 권리 단, 제휴단체는 제외한다.

2. 협회에 건의 및 소청할 권리

3. 협회가 주최·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권리

4. 협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주관할 수 있는 권리

5. 해당 단체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협회에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② 등록단체 및 개인회원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권리를 갖는다.

1. 협회에 건의 및 소청할 권리

2. 협회가 주최·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권리

3. 등록단체의 경우 협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시·도 회원단체, 전국규모연맹체, 재외한인요트협회, 한국클래스협회, 제휴단체와 공동으로 주최·주관할 수 있는 권리

③ 단체 및 개인회원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의무를 갖는다.

1. 협회의 정관, 제 규정 및 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해당 단체의 총회 종료 후 15일 이내에 협회에 보고할 의무 단, 등록단체 및 개인회원은 제외한다.

3. 협회 이사회에서 정하는 회비를 납부할 의무

4. 협회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무

③ 제3항제3호에 따른 재원은 협회의 목적사업 수행 및 운영 외의 사용에 대해서는 협회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5조(시·도 회원단체의 가입요건) ① 협회에 시·도 회원단체로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해당 시·도를 대표하는 유일의 요트단체일 것

2. 시·군·구 회원단체 또는 협회에 등록된 단체, 팀, 클럽의 수가 7개 이상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을 것

3. 해당 시·도로 가입한 선수의 수가 50인 이상일 것

제6조(전국규모연맹체의 설치요건) ① 협회에 전국규모연맹체의 설치요건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협회 사업 중 하나의 목적사업을 위해 연맹 자체 예산을 통해 사업수행을 할 수 있을 것

2. 협회에 등록된 단체, 팀, 클럽의 수가 전국 시·도에 9개 이상으로 구성 되어야 할 것

제7조(재외한인요트협회의 가입요건) ① 협회에 재외한인단체로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해당 국가를 대표하는 유일의 재외 한인요트단체일 것

2.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이 주된 목적으로 요트종목 진흥에 관한 것일 것

3.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4.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5.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6. 최근 1년 이상 요트종목 활동실적이 있을 것

7. 단체의 주된 사무소가 대한민국에 소재할 것

제8조(한국클래스협회의 가입요건) ① 협회에 한국클래스협회로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해당 클래스를 대표하는 월드세일링에 의해 공인된 클래스로 해당 국제클래스협회에 가맹된 한국 유일의 단체일 것

2. 해당 클래스의 장비가 다음 각 세부종목에 따른 장비보급 기준 수 이상 국내에 보급되어 있을 것

가. 딩기: 50척

나. 윈드서핑: 50척

다. 카이트보딩: 50척

라. 킬보트: 20척

3. 연 1회 이상 해당 클래스 전국규모대회를 개최하여야 할 것

제9조(제휴단체의 가입요건) 제휴단체의 가입요건은 시·도 회원단체, 전국규모 연맹체, 재외한인요트협회, 한국클래스협회의 목적과 상충되지 않고 이 외의 세일링 스포츠 이익에 부합하는 단체이어야 한다.

제10조(등록단체 및 개인회원의 가입요건) 협회에 등록단체 및 개인회원의 가입요건은 협회 사업의 참여를 위하여 협회 홈페이지 및 등록시스템을 통해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감사) ① 협회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은 단체는 그 지원금을 관련 규정 및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단체의 사업 및 회계업무를 조사·감사할 수 있다.

③ 협회 관계단체가 정관 및 규정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거나 협회로부터 지원받은 재정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협회는 해당 단체에 대하여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조사·감사의 결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진 경우 협회는 협회의 징계 및 감사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와 관계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거나 징계처분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부 칙(2019. 1.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대한요트협회 가입신청서

<table>
<tr><td rowspan="4">신청인
(대표자)</td><td>① 단체명</td><td colspan="2"></td><td>② 연락처</td><td></td></tr>
<tr><td>③ 주소</td><td colspan="4"></td></tr>
<tr><td>④ 대표자</td><td colspan="2"></td><td>⑤ 생년월일</td><td></td></tr>
<tr><td>⑥ 현 주소</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⑦ 설립 연월일</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⑧ 설립목적</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⑨ 회원 및 지회 현황</td><td>회원수</td><td></td><td>지회수</td><td></td></tr>
<tr><td colspan="2" rowspan="2">⑩ 아시아/국제연맹과의 관계</td><td rowspan="2">명칭</td><td></td><td rowspan="2">회원가입 여부</td><td></td></tr>
<tr><td></td><td></td></tr>
<tr><td colspan="6">「대한요트협회 정관」 제5조, 가입및탈퇴규정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대한요트협회 회원 가입을 신청하며, 동 규정에서 정한 권리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대한요트협회장귀하</td></tr>
<tr><td colspan="6">붙임서류
1. 단체 소개서(연혁, 단체설명, 활동개요, 조직, 임원명단, 회원명단, 전년도 사업계획·예산서 및 결산서 등)
2. 단체의 정관(규약) 및 제 규정
3. 가입 또는 등록을 의결한 회의록</td></tr>
</table>